

『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9년 3월 23일

나. 발 의 자 : 우진석, 권기만, 길윤옥, 김도문
김상조, 김영호, 김익수, 김태근
박광석, 박교상, 박세채, 박순이
석호진, 구자근, 윤서규, 이갑선
임춘구, 장세만, 전인철, 정근수
한정우, 허 복, 황경환 (23인)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3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4월 6일

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우진석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통·리장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근거를 신설함(안 제6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
-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지방행정과 주민의 사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·리장의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차원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·리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과
-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및 교육훈련·연수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리장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·연수 등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새마을 남·여지도자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